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명지대학교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
II.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험생 유의사항	5
III. 지원자격 심사기준	8
IV. 전형방법	13
V. 제출서류	14
VI. 기타 안내 사항	16
VII. 참고자료(전년도 입시 결과)	20
VIII. 별첨(각종 제출서류 양식)	21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교포(영주권자) 자녀, 해외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캠퍼스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캠퍼스 (서울)	인문대학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12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동학부	아랍지역학과★	2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12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지도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12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2	
ICT융합대학	융합소프트웨어학부		2	
인 문 캠퍼 스 소 계				42
자연캠퍼스 (용인)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3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ICT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과		2
전공자유학부(자연)				6
자 연 캠퍼 스 소 계				11
총 계				53

※ ★표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 개설학과로 교직 이수 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아동학과는 유치원정교사 2급, 청소년지도학과는 전문상담교사 2급, 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함(단, 교육부의 교직과정 승인사항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융합소프트웨어학부: 2학년 진급 시 세부전공(응용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 전공자유학부: 2학년 진급 시 학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자연) 자연캠퍼스 공과대학 소속의 학과 선택(단, 전자공학과 20명, 컴퓨터공학과 20명까지만 선택이 가능)

※ 교육부 정원인가 조정 등에 의하여 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인, 북한이탈주민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12년)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인, 북한이탈주민은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교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선발함

■ 인문캠퍼스(서울)

단과대학	모집단위	
인문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
		일어일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중동학부	아랍지역학과 ★
	인문학부	사학과 ★
		문헌정보학과 ★
		미술사학과
		철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회과학	행정학과 ★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아동학과 ★	
	청소년지도학과 ★	
경영	경영학과 ★	
	국제통상학과 ★	
	경영정보학과	
법과	법학과 ★	
전공자유학부(인문)		
융합전공학부(인문)		
ICT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미래융합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자연과학	수학과 ★		
	물리학과 ★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		
	생명과학정보학과		
공과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화공신소재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		
	토목교통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	
		교통공학과	
	기계산업경영공학부	기계공학과 ★	
		산업경영공학과	
융합공학부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전공자유학부(자연)			
예술체육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	
		산업디자인전공 ★	
		영상디자인전공 ★	
		패션디자인전공 ★	
	스포츠학부	체육학/스포츠산업학전공 ★	
	바둑학과		
	예술학부	피아노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영화전공 ★	
뮤지컬공연전공 ★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전통건축전공	
		공간디자인전공	
국제학부			

- ※ ★표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 개설학과로 교직 이수 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문헌정보학과는 사서교사 2급, 아동학과는 유치원정교사 2급, 청소년지도학과는 전문상담교사 2급, 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함(단, 교육부의 교직과정 승인사항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 교육부 정원인가 조정 등에 의하여 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 융합소프트웨어학부: 2학년 진급 시 세부전공(응용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 ※ 전공자유학부: 2학년 진급 시 학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인문)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과 선택(단, 디지털미디어학과 13명, 경영학과 24명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며 미래융합대학, ICT융합대학은 선택 제외)
(자연) 자연캠퍼스 공과대학 소속의 학과 선택(단, 전자공학과 20명, 컴퓨터공학과 20명까지만 선택이 가능)
- ※ 융합전공학부(인문): 2학년 진급 시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과를 반드시 선택(단, 디지털미디어학과 7명, 경영학과 12명 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며 미래융합대학, ICT융합대학은 선택 제외)하여야 하며, 미래산업연계전공 중 1개의 연계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대학에서 개설하는 연계전공은 학칙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미래융합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 2학년 진급 시 미래융합대학 소속의 학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 ※ 공과대학 융합공학부: 2학년 진급 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중 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며, 스마트임베디드기계시스템공학을 연계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학과 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 선택 기준에 따름)
- ※ 스포츠학부: 2학년 진급 시 세부전공(체육학전공, 스포츠산업학전공)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 ※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5년제 과정임(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은 KAAB 인증)
- ※ 국제학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수업이 진행됨
- ※ 미래융합대학은 야간 및 주말에 수업이 진행됨

II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험생 유의사항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 접수기간 : 2020.7.20.(월) 10:00 ~ 7.22.(수) 17: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별도의 원서 교부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 접수처 :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mju.ac.kr>)에 접속하여 “원서접수” 배너 클릭
- ※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형료 및 환불 안내> (p.15) 참조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방법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mju.ac.kr) → 원서접수 대행기관 ▪ 접수마감일은 많은 지원자가 몰려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수 ▪ 접수 마감시한까지 원서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보호자 등 타인 명의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	
접수대학 리스트 중 [명지대학교] 선택	▪ 명지대학교 선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모집요강 및 원서 접수 유의사항 숙지	▪ 입학원서 작성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이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
↓	
지원내용 및 지원자 정보 입력(사진첨부)	▪ 개인 인적사항, 연락처,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유형, 모집단위 등 정확히 기입 ▪ 누락 또는 표기의 잘못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jpg, gif)로 업로드
↓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납부 전 반드시 최종 입력 내용 확인 ▪ 전형료 납부 후에는 전형 및 모집단위 변경, 원서접수 취소, 전형료 환불 불가
↓	
전형료 결제	▪ 원서접수(전형료 납부) 마감일: 2020.7.22.(수) 17:00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을 통하여 전형료 납부 ▪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 완료 ▪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취소 불가
↓	
수험표 출력	▪ 면접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출서류 우편발송 (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 2020.7.20.(월) ~ 7.24.(금) ※ 2020.7.2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제출불가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 후 부착] ▪ 제출주소 :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행정동 1층 입학팀
↓	
제출서류 도착여부 확인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iphak.mju.ac.kr)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원서접수 취소, 모집단위 변경, 전형 및 지원자격 변경, 전형료 환불 등은 일절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 ‘입학원서 정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발급)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므로 원서접수 전 사진파일(jpg, gif)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 **서류제출은 기한 내에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류제출 시에는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겹봉투에 부착한 후, “제출서류”와 “입학원서”를 함께 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우편 배달사고 등의 사유로 기일 내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재외국민모집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시행하며, 다음의 원서접수업체가 대행합니다. 만약 접수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원서접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접수업체 안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 전화 1544-7715

- 모든 서류제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 합니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접수	2020. 7. 20.(월) 10:00 ~ 7. 22.(수) 17:00	인터넷 접수(http://iphak.mju.ac.kr) 기간 내 24시간 접수
서류제출기간	2020. 7. 20.(월) ~ 7. 24.(금)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제출불가 2020.7.2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면접고사장 발표	2020. 8. 4.(화) 15:00 예정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mju.ac.kr)
면접고사	2020. 8. 8.(토)	인문캠퍼스(서울)에서 실시
합격자 발표	2020. 8. 18.(화) 15:00 예정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mju.ac.kr)
합격자 등록	2020. 12. 28.(월) 10:00 ~ 12. 30.(수) 16:00	문서 등록
총원합격자 발표	2020. 12. 31.(목) ~ 2021. 1. 4.(월) 21:00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또는 전화 개별통보
총원합격자 등록	총원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최종 등록금 납부	2021. 2. 8.(월) 10:00 ~ 2. 10.(수) 16:00	
최종 등록자 서류 제출	2021. 2. 28.(일)까지	2021.2.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최종등록자 원본 서류 제출

- 상기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합격여부 확인은 합격자 발표일에 우리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거나 문서등록 후 최종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합격취소)로 처리합니다.
-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인터넷으로만 교부합니다.(합격자 본인 직접 출력).
- 문서등록 후 등록금을 납부(최종등록)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시 전액 장학생(등록금 “0원”)이더라도 등록금고지서 확인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최종등록하여야 합니다.
- 총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관련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변경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발표차수	발표 일정(안)	등록 일정(안)	발표 방법
1차 총원	2020.12.31.(목) 10:00	2020. 12.31.(목) 10:00 ~ 16:00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개별통보하지 않음)
2차 총원	2021. 1. 2.(토) 10:00	2021. 1. 2.(토) 10:00 ~ 16:00	
3차 총원	2021. 1. 3.(일) 10:00	2021. 1. 3.(일) 10:00 ~ 16:00	
4차 총원	2021. 1. 4.(월) 9:00 ~ 14:00	2021. 1. 4.(월) 9:00 ~ 16:00	전화 개별통보
5차 총원	2021. 1. 4.(월) 17:00 ~ 21:00	2021. 1. 4.(월) 17:00 ~ 1. 5.(화) 16:00	

-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한 발표 시에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개별통보 하지 않음),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 1) 수시모집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 가능)
- 2)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 처리됩니다.
- 3) 수시모집[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포함]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에 유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타 대학 지원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나.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 1)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2) 수시모집의 최종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교의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다. 복수지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라. 지원자 유의사항

- 1)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입력, 서류 미제출,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수험기간 중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입학원서 개인정보 정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신청(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하여야 하며, 연락이 두절되어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3) 필수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합격취소) 처리합니다.
- 4)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처분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형료, 입학금,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위의 사항으로 합격(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합격(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5) 접수가 완료된 후 입학원서 접수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7) **대학입학 전형결과 성적이 우리 대학교가 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8)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중 고사진행에 있어 특별한 별도 관리(도움)가 필요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전 입학처로 연락하여 고사 진행과정에 필요한 각종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상의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9) 합격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반드시 합격자 발표 당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또는 컴퓨터 조작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10)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원서 접수 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12) 합격자는 정해진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13)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합격(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형료, 입학금,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14)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입학)이 취소된 자는, 합격(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15)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및 일반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 또는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III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부모의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지원자의 경우 최소 해외 재학기간 동안 부모가 동반 근무, 거주(영주)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검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예외적으로 지원자격 등을 인정할 수 있음

지 원 구 분			지 원 자 격
재 외 국 민 (2 % 이 내)	해 외 근 무 자 자 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근무하는 중이거나 근무 후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근무하는 중이거나 근무 후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근무하는 중이거나 근무 후 귀국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독립교회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인정하는 종교단체에서 해외에 파견되어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 후 귀국한 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적법한 절차로 외국에서 근무 중(자영업, 현지법인근무)이거나 근무 후 귀국한 자의 자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인정함)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인정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과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외국인’ 은 본교 ‘외국인 학생 내규’ 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국제교류팀(☎ 02-300-1513)으로 문의



해외근무자 지원자격 인정범위

구 분	인 정 범 위
해외근무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근무 상사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기타 재외국민	보호자의 해외거주 유형 : 자영업, 현지법인 근무



부모 및 학생의 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해외에 체류한 자

나. 해외체류일수 인정기준

-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3)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며 방학을 포함하여 산정
 -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함

다. 근무, 거주 및 체류기간 인정기준

- 1) 근무기간은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 2)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 3) 현재 계속 근무, 거주, 체류 중일 경우 기간을 학생의 졸업예정일까지로 산정합니다.
- 4) 보호자의 근무, 거주, 체류기간은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보호자가 소속 기관(회사)의 공식적인 발령이 아닌 개인적인 유학, 교육, 연수, 안식년, 여행 등으로 해외에 근무/거주하는 기간은 제외)
- 5)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학생의 재학기간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이전까지 배우자의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보호자의 근무국에 소재한 정규교육과정 내의 학교만 인정합니다.
다만, 보호자 근무국의 지역·종교·전쟁 등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보호자의 근무 지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2)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원 등의 교육기관 및 외국검정고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그 기간 중 국내 체류기간이 1학기 당 1개월 미만일 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 외국학교 학년 인정기준

-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함

바.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기준

- 1)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외국 교육과정	국내 교육과정
1 ~ 6학년 과정(Grade 1 ~ Grade 6)	초등학교 과정
7 ~ 9학년 과정(Grade 7 ~ Grade 9)	중학교 과정
10 ~ 12학년 과정(Grade 10 ~ Grade 12)	고등학교 과정

※ 10학년 학제의 해외 고교를 졸업한 경우 12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대학에서 이수(수료)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함

※ 11학년 학제의 해외 고교에서 마지막 3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함
단, 11학년 학제의 해외 고교에서 3년 미만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

하지 않으며 이 경우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대학에서 이수(수료)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함

※ 13학년 학제의 해외 고교에서 12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함

- 2)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3) 해외 고교 졸업예정인 경우에는 재학기간 산출을 졸업 예정일까지로 합니다.

단, 2021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여야 하며, 학제 상 고교졸업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 2021년 3월 졸업까지 인정
-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증빙서류(학교발급 사유서, 관련규정 등)를 제출하면 총 재학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인정합니다.
- 5) 지원자가 해당국가에서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교소재 국가를 이탈한 후 복귀한 경우는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6) 다음 2가지의 경우에는 재학기간(특례요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외 고교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과정으로 편입학한 경우
 - 해외 고교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고교과정에 신입학한 경우

사.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기준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판정 : 총 23개 학기로 지원자격 충족(G11-1 누락)

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 ~ G3-1 중
1개 학기만 G4-2 ~ G5-1 중
1개 학기로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판정 : 총 22개 학기로 지원자격 미충족(G4-2 ~ G5-1 중 1개 학기 누락, G11-1 누락)

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인 인정기준

- 1)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학년)을 전부 이수하였을 경우에 인정합니다.
- 2) 10학년제 또는 11학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3) 13학년제 국가에서 12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경우 지원 자격이 인정합니다.
- 4) 해외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인정합니다.
- 5)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총 재학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인정합니다.
- 6)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인의 지원 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 거주 및 체류기간 등에 대한 조건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지원자격 판정 예시

가. 학기를 온전히 이수한 경우

CASE 1 (온전한 학기 이수)	
- 학사일정 :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 해외 재학기간 : G8(2015.8.1. ~ 2016.6.23.), G9(2016.8.0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 해외 근무기간(발령일 기준) : 2015.8.1. ~ 2018.7.31. ※ 해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Q1.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인정 기준	
① 원칙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 G8(2015.8.1. ~ 2016.7.31.), G9(2016.8.1. ~ 2017.7.31.), G10(2017.8.1. ~ 2018.7.31.) ② 예외(인정)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자) ☞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Q2. 해외근무자의 해외 근무기간 산정 기준	
- 2015.8.1. ~ 2018.7.31. ※ 학생이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이수했다더라도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Q3. 해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이 시작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 G8(2015.8.1. ~ 2016.7.31.), G9(2016.8.1. ~ 2017.7.31.), G10(2017.8.1. ~ 2018.7.31.)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을 체류해야 함 ※ 학생이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이수했다더라도 해외 체류일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Q4. 학생이 G10 학기 수료 후 2018.6.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G10(2017.8.1. ~ 2018.7.31.) 동안 해외 체류일수 3/4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	
Q5. 해외근무자의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2018.6.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G10(2017.8.1. ~ 2018.7.31.) 동안 해외 체류일수 2/3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	
Q6. 만약 해외 근무기간이 2015.8.1. ~ 2018.6.26.(발령일 기준)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지원자격 미충족 ※ 해외근무자의 해외 근무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8.07.31.까지 외국에서 근무해야 지원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음	

나. 학기 개시 후 중간 편입한 경우

CASE 2 (학기 개시 후 중간 편입)	
- 학사일정 :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 해외 재학기간 : G8(2015.9.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 해외 근무기간(발령일 기준) : 2015.9.1. ~ 2018.8.31. ※ 해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Q1.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인정 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G8 학기 개시 1개월 후 편입하였으므로 G11 1개월 재학이 추가로 필요함 G8(2015.9.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G11(2018.8.1. ~ 8.31.)	
Q2. 해외근무자의 해외 근무기간 산정 기준	
- 2015.9.1. ~ 2018.8.31.	
Q3. 해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을 체류해야 함 ① (2015.9.1. ~ 2016.8.31.), (2016.9.1. ~ 2017.8.31.), (2017.9.1. ~ 2018.8.31.) ② G8(2015.9.1. ~ 2016.7.31.) + G11(2018.8.1. ~ 8.31.), G9(2016.8.1. ~ 2017.7.31.), G10(2017.8.1. ~ 2018.7.31.) ※ 위 ①, ② 중 학생, 해외근무자 및 배우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체류일수 산정	

다. 해외 근무기간과 해외 재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CASE 3-1 (해외 근무기간과 해외 재학기간 불일치 - 부족한 중첩기간)	
- 학사일정 :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 해외 재학기간 :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 해외 근무기간(발령일 기준) : 2015.9.1. ~ 2018.8.31.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Q.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지원자격 미충족 ※ 해외근무자의 해외 근무기간과 중첩되는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이 3개 학년(6개 학기)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 함 : 2015.8.1. ~ 8.31. 기간 동안의 재학기간은 해외 근무기간과 중첩되지 않으므로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음	

CASE 3-2 (해외 근무기간과 해외 재학기간 불일치 - 충분한 중첩기간)	
- 학사일정 : G7(2014.8.1. ~ 2015.6.23.),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 해외 재학기간 : G7(2014.8.1. ~ 2015.6.23.),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 해외 근무기간(발령일 기준) : 2015.8.1. ~ 2019.7.31.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Q.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지원자격 충족 ※ 해외근무자의 해외 근무기간과 중첩되는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이 G10 포함 3개 학년을 온전히 충족하므로 지원자격 충족 중첩기간 :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라. 해외 재학기간 중 고교과정이 1개 학년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

CASE 4-1 (고교과정 1개 학년 미만)	
- 학사일정 : G7(2014.8.1. ~ 2015.6.23.),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 해외 재학기간 : G7(2014.8.1. ~ 2015.6.23.),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3.31.) - 해외 근무기간(발령일 기준) : 2014.8.1. ~ 2018.7.31.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Q.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지원자격 미충족 ※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중 고교과정이 2017.8.01. ~ 2018.3.31. 로 1개 학년을 온전히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지원자격 미충족	

CASE 4-2 (고교과정 1개 학년 미만 - 해외 근무기간 중첩기간 부족)	
- 학사일정 : G7(2014.8.1. ~ 2015.6.23.),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 해외 재학기간 : G7(2014.8.1. ~ 2015.6.23.), G8(2015.8.1. ~ 2016.6.23.), G9(2016.8.1. ~ 2017.6.23.), G10(2017.8.1. ~ 2018.6.23.) - 해외 근무기간(발령일 기준) : 2014.8.1. ~ 2018.3.31.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Q. 지원자격 충족 여부	
- 지원자격 미충족 ※ 해외근무자의 해외 근무기간과 중첩되는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중 고교과정이 2017.8.1. ~ 2018.3.31. 로 1개 학년을 온전히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지원자격 미충족 ※ 2018.4.1. ~ 6.23. 기간 동안의 재학기간은 해외 근무기간과 중첩되지 않으므로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음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해당 모집단위	일괄전형	면접고사 100%



면접고사

구 분	내 용	비 고
면접시간/장소 발표	2020.8.4.(화) 15:00 예정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면접고사일	2020.8.8.(토)	인문캠퍼스(서울)에서 실시 (오전/오후)
평가항목	○ 성실성/공동체 의식 ○ 전공잠재역량 ○ 전형취지 부합도	
면접방법	수험생 1인 약 5분 내외	면접위원 2~3인

- ※ 면접고사에 응시하는 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 면접대기실에서 간략한 자기소개서 형태의 면접기초자료를 약 20분간 작성(A4용지 1매 분량)하며, 이는 평가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에서 예술체육대학 내 모집단위의 경우 면접고사 시 간단한 실기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음
- ※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중 고사진행에 있어 특별한 별도 관리(도움)가 필요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전 입학처로 연락하여 고사 진행과정에 필요한 각종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상의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선발기준

- 모집인원의 100%를 면접고사 성적순위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고사 성적이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중 성실성/공동체의식, 전공잠재역량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합니다. 단,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일 경우 모두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충원 선발합니다.
- 대학입학 전형결과 성적이 우리 대학교가 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휴교, 격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학, 체류가 어려운 경우 관련자료는 [별첨] 사유서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가. 재외국민 대상자

제출서류	자격구분	재외국민						비 고
		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 근무 상사 직원 자녀	외국 정부 · 국제 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 과학자 · 교수 요원 자녀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기타 재외 국민 자녀[*]	
입학원서		○	○	○	○	○	○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	○	○	○	○	○	
제출서류 목록표		○	○	○	○	○	○	
국내외 ① 초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② 중학교 성적/졸업증명서 ③ 고등학교 성적/졸업(예정)증명서 ④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 재학기간이 명시된 재학사실증명서로 제출		○	○	○	○	○	○	◦ 사본 제출 가능 (최종등록시 원본제출) ◦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 외국학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 영사확인서 포함 (학사일정표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원본 제출 ◦ 부, 모, 학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	○	○	○	○	◦ 원본 제출 ◦ 외국 근무기간 및 근무국가 명시
보호자 재직증명서 (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	○	○	○	○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서 사본			○					◦ 발급 기관 원본대조필
정부초청·추천에 관한 증빙서류					○			
파송증명서(파송국가 및 파송기간 명시)						○		
외국정부가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지원자격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	◦ 법인세, 사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여권 사본		○	○	○	○	○	○	◦ 부, 모, 학생
학력조회 동의서		○	○	○	○	○	○	◦ 원서접수 시 사이트에서 출력
제3국 수학인정서		△	△	△	△	△	△	◦ 해당자에 한함
사유서(학기인정)		△	△	△	△	△	△	◦ 해당자에 한함

[*] 기타재외국민자녀: 1)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2)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나.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제출서류	자격구분		북한 이탈 주민	비 고
	전교육과정 재외 국민	해외이수자 결혼 이주민		
입학원서	○	○	○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	○	○	
제출서류 목록표	○	○	○	
국내외 ① 초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② 중학교 성적/졸업증명서 ③ 고등학교 성적/졸업(예정)증명서 ④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 재학기간이 명시된 재학사실증명서로 제출 * 북한이탈주민 대상자의 경우 국내 재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	◦ 사본 제출 가능 (최종등록시 원본제출) ◦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 외국학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 영사확인서 포함 (학사일정표 제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	○		◦ 원본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원본 제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		
여권 사본	○	○		
학력조회 동의서	○	○		◦ 원서접수 시 사이트에서 출력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의 경우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 시·군·구청 발급
고교졸업 학력확인 서류			△	◦ 학력확인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구청 발급
사유서(학기인정)	△	△		◦ 해당자에 한함

【*】 통일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다. 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 또는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거주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이 필요없음)
※ 발급대상서류: 해외 초·중·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
-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시작 일(2020.7.20.)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0.4.21.이후)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단, 해외발급서류의 경우 해외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서류는 유효합니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 고교 졸업예정자는 합격 후 2021.2.28.(일) 이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우리 대학교 입학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지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호자 사망·실종·직권말소 등 가족관계 특이자인 경우 제적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동일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전형료

구 분	전형료
재외국민	120,000원
북한이탈주민	7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부담합니다.

1. 전형료 환불 원칙

- 원서접수 완료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전형료 환불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전형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형료 환불기준 및 환불액

전형료 환불기준	환불액
지원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 금액
대학의 귀책 사유(사전공지 없이 전형일 변경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 전형료 전액
천재지변 및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사유[입원(질병, 사고) 사망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납부 전형료 전액

3. 전형료 비례 반환

- 우리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21. 4. 30.(금)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우리 대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사관련 사항

1. 우리 대학교의 모든 학생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 실현과 전인교육을 위해 재학 중 **채플(4학기)**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신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의무군복무와 질병, 모성보호, 창업으로 인한 휴학)를 제외하고 입학 후 첫 학기를 휴학할 수 없습니다.
3. 모든 신입생은 지정된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과대학 전 학과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경영대학 전 학과는 경영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의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융합전공학부(인문)**는 2학년 진급 시에는 ICT융합대학과 미래융합대학을 제외한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부(과)를 반드시 선택(다만, 디지털미디어학과 7명, 경영학과 12명까지만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미래산업연계전공(인문ICT콘텐츠, 응용데이터사이언스, Entrepreneurship) 중 1개의 연계전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대학에서 개설하는 연계전공은 학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과대학 융합공학부**는 2학년 진급 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중 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며, 스마트 임베디드기계시스템공학을 연계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과 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 선택 기준에 따릅니다.
6. **전공자유학부** 학과 배정 원칙: 2학년 진급 시 학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인문)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과 선택(단, 디지털미디어학과 13명, 경영학과 24명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며, ICT융합대학 및 미래융합대학은 선택 제외)
(자연) 자연캠퍼스 공과대학 소속의 학과 선택(단, 전자공학과 20명, 컴퓨터공학과 20명까지만 선택 가능)
7. **미래융합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 2학년 진급 시 미래융합대학 소속의 학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8. **건축학부**는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이 불가능합니다.
9. 전과는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다만, 전공자유학부 및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은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전출학부(과) 성적이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1. 건강검진은 최종 등록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2021년 1학기 중 실시예정)
2. 건강검진 결과 전염병 등 수학에 지장을 주는 질환자는 치료 시까지 병고휴학과 같은 학교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생활관(기숙사) 안내

◆ 인문캠퍼스(서울) 생활관 ◆

- 홈페이지 : <http://sdorm.mju.ac.kr>
- 연 락 처 : 02-300-1768
- 위 치 :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내)
- 규 모 : 연면적 약 11,940㎡(3,612평)의 9층 건물
- 수용인원 : 860여명
- 부대시설 : 체력단련실, 편의점, 세탁실, 간이취사실, 카페, 무인출력기, 멀티자판기
- 입사자격 : 인문캠퍼스 합격자
- 선발기준 : 입사신청 기간(추후 별도 공지예정) 내 신청한 신입생 중 선발
생활관 수용인원 초과 시 거리 점수 적용



◆ 자연캠퍼스(용인) 생활관 ◆

- 홈페이지 : <http://dorm.mju.ac.kr>
- 연 락 처 : 031-330-6077
- 위 치 : (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
- 규 모 : 명현관(지하1층, 지상5층) / 명덕관(지하1층, 지상5층) /
제3생활관 3동(지하1층, 지상5층) / 4동(지하1층, 지상10층) / 5동(지하1층, 지상10층)
- 수용인원 : 1,860여명
- 부대시설 : 체력단련실, 빨래방, 식당, 현금지급기, 편의점, 스낵코너, 휴게실, 열람실, 탁구장, 카페
- 입사자격 : 자연캠퍼스 합격자
- 선발기준 : 입사신청 기간(추후 별도 공지예정) 내 신청한 신입생 중 선발
생활관 수용인원 초과 시 거리 점수 적용





신입생 장학금 안내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지급액	비고
보훈장학금	1종 국가로부터 보훈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2종 제1종 해당자의 직계자녀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직계자녀로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1.88(70점)이상인 자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3종 장기복무 제대자로서 보훈처에서 인정한 제대군인 교육보호 대상자	8개 학기 등록금 50% (입학금 포함)	
명지사랑 장학금	1종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소년소녀가장으로서 매 학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국가장학금 신청자
	2종 ①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3급 이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②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 으로 등록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①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② 8개 학기 등록금 70% (입학금 제외) ③ 해당 학기 등록금 50% (입학금 제외)	국가장학금 신청자
	3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① 장애등급 1급~3급 ② 장애등급 4급 이상	① 1,000,000원 ② 500,000원	
	4종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파악이 된 자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선발 ① 소득 1분위 ② 소득 2분위 ③ 소득 1분위 중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자	매 학기 별도 책정	국가장학금 신청자
	5종 신입생의 형제, 자매 중 재적생이 있는 자	입학금 전액	
학술활동 장려장학금	1종 우리 대학교 지정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에 등단한 자 학술, 음악, 미술, 정보 및 체육 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자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2종 1종 대상자격 외 입상자 (다만, 단체 및 팀 입상의 경우 해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장학금 균등분할 지급)	1개 학기 등록금 50% (입학금 제외)	



재학생 장학금 안내

총장특별장학금, 백마장학금, 모범장학금, 자치활동장학금, 고시장학금, 미디어장학금, 기독교도우미장학금, 연수장학금, 사회진출지원장학금, Honor 프로그램장학금,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장학금, 평생학습자특별장학금, 평생학습장려장학금, 명지다움장학금, 그린캠퍼스활동지원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교육훈련장학금, 글로벌버디장학금, 창업지원장학금, 취업지원장학금, 융합인재육성장학금 외 다수의 교내외 장학금



입학상담 안내

입학팀 전화 상담 : 02-300-1799, 1800

<https://iphak.mju.ac.kr>

2020학년도 입시 결과 ※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제외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4	11	2.75
	일어일문학과	3	9	3.00
	영어영문학과	5	11	2.20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2	5	2.50
	경제학과	2	5	2.50
	정치외교학과	2	5	2.50
	디지털미디어학과	2	18	9.00
경영대학	경영학과	6	26	4.33
	국제통상학과	2	8	4.00
	경영정보학과	2	5	2.50
법과대학	법학과	2	3	1.50
-	전공자유학부(인문)	9	26	2.89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	4	2.00
	생명과학정보학과	2	2	1.00
ICT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과	2	6	3.00
-	전공자유학부(자연)	6	18	3.00
계		53	162	3.06

제출서류 목록표(해당 ● 위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제출)

모집단위(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제출서류	자격구분	재외국민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 재외국민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 결혼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새터민)	비고
		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 근무 상사 직원 자녀	외국 정부 · 국제 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 과학자 · 교수 요원 자녀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기타 재외 국민 자녀*				
입학원서		●	●	●	●	●	●	●	●	●	원서접수 사이트 출력 제출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	●	●	●	●	●	●	●	●	
국내외 ① 초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② 중학교 성적/졸업증명서 ③ 고등학교 성적/졸업(예정)증명서 ④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 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 재학기간이 명시된 재학사실증명서로 제출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	●	●	●	●	●	●		
보호자 재직증명서 (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	●	●	●	●	●	●		외국 근무기간 및 근무국가 명시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서 사본			●								
정부초청·추천에 관한 증빙서류				●							
파송증명서(파송국가 및 파송기간 명시)					●						
외국정부가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지원자격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					법인세, 사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의 경우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발급
고교졸업 학력확인 서류										△	학력확인서, 고등학교졸 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구청 발급
여권 사본		●	●	●	●	●	●	●	●		
학력조회 동의서		●	●	●	●	●	●	●	●		
기타 서류(해당자)		제3국 수속인정서,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 시), 지원자의 기본증명서(부모 이혼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부모 사망 시), 입양관계증명서(본인 입양 시), 사유서(학기 결손 등)									

학력조회 동의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심사 서류로 제출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지대학교가 지원자 본인의 학적 및 성적을 조회함을 동의합니다.

성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	--	------	--	------	--

순번	학교명	학교 주소	재학기간
		학교 전화 / 팩스 / 학교 홈페이지	
1			~
2			~
3			~
4			~
5			~
6			~
7			~
8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후 출력

2020년 7월 일

명 지 대 학 교 입 학 처 귀하

사 유 서

성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	--	------	--	------	--

- ※ 학기 및 수업결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맞춰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구체적으로 기재)							
사유	☐ 학기결손	☐ 학기중복	☐ 월반	☐ 휴학	☐ 조기졸업	☐ 국내체류	☐ 기타
해당 학교명				해당학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후 출력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본 인 : (인)

보호자 : (인)

명 지 대 학 교 입 학 처 귀하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포함 Yes [☐]미포함 No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포함 Yes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포함 Yes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

「위임장」의 「발급대상자」란에 해당자 본인이 직접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세요.
210mm×297mm[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학·근무

지원학과(부) :		수험번호 :		지원자 성명 :	
지 원 구 분	☐ 교포의 자녀		☐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 해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선교사 및 목회자의 자녀		☐ 전 교육과정(12년) 이수

◎ 지원학생 기재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학교 소재지 (국가명)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년▶		1		2		3		4		5		6					
	기	간		재학년수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 부모 기재사항

구 분	해 외 체 류 기 간(근무)		체류국	근무처	구 분	해 외 체 류 기 간	
	기 간	체류년수				기 간	
부(父) 성 명 ()	. . . ~ . . .	년 개월			모(母) 성 명 ()	. . . ~ . . .	
	. . . ~ . . .	년 개월				. . . ~ . . .	
	. . . ~ . . .	년 개월				. . . ~ . . .	
	. . . ~ . . .	년 개월				. . . ~ . . .	
	. . . ~ . . .	년 개월				. . . ~ . . .	
외국인 기재란	국적() 시민권번호() 시민권취득일(. . .)			외국인 기재란	국적() 시민권번호()		
교 포 기재란	영주국() 영주권번호()			교 포 기재란	영주국()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